

인천지방법원 2023. 2. 8 선고 2022가단249465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효성 담당변호사 신정현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3. 1. 18.

판 결 선 고 2023. 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2. 7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원고는 2021. 7. 15.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D 지상 단독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 설계 및 신축공사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21. 7. 15. 및 2021. 7. 16. 합계 7,000만원(이하 '이 사건 계약금'이라 한다)을 지급한 사실, 피고는 2022. 6.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테리어 도면, 인테리어 제안서, 산출내역서 등의 작성을 완성하지 아니한 사실, 이에 원고는 2022. 6. 7.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, 2022. 6. 15.에도 동일한 이유로 해제 및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7,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. 7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건축비 마련을 위한 원고 소유 아파트 매각 및 대출 준비가 미비하여 예정된 2022. 3.경 착공이 어렵다면서 착공 연기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,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이 늦어진 것으로, 그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

없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)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진수

별지

1) 피고는 을 제1 내지 14호증을 접수하였으나,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인 2022. 11. 30.과 제2차 변론기일인 2023. 1. 18.에 각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증거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(대법원 1991. 11. 8.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).